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	**보도자료**	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
2012년 3월 29일(목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자료문의 : 산업피해조사팀장 김남영, 김광석 사무관(02-2110-5562) 덤핑조사팀장 방순자, 최병달 사무관(4961)		

무역위원회, 『중국 및 인도産 PET필름』에 대해 반덤핑관세 3년간 연장

□ 무역위원회(위원장: 현정택)는 '12.3.28(수), 제300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『중국 및 인도産 PET필름』의 반덤핑조치 종료 재심사를 통해

○ 업체별로 5.87%~25.32%의 덤핑방지관세를 향후 3년간 연장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최종판정 하였다.

○ 동 재심사대상물품은 그동안 원심조치에 따라 지난 '0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5.67%~25.32%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어 왔다.

□ 무역委는, 그간 반덤핑조치로 국내생산품의 판매와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등 국내산업의 피해가 회복되고 있기는 하지만

○ 중국 및 인도의 공급자 생산능력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어, 반덤핑조치가 종료되면 덤핑과 국내산업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.

□ 이번 재심사는 지난해 4월 국내생산자인 도레이첨단소재(주), 코오롱인더스트리(주), (주)효성, (주)화승인더스트리가 종료재심사를 신청해 옴에 따라, 무역委는 그동안 반덤핑조사를 위한 현지실사와 공청회 등을 실시하였다.

□ PET필름은 포장용(스낵포장, 용기뚜껑 등), 그래픽용(잉크젯, 인쇄제판 등), 전기절연용, 광학용(LCD, PDP 소재 등) 등 우리 실생활의 많은 부분에 활용되고 있으며, 최근 광학용 고부가가치 PET필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.

○ 국내시장규모는 '10년 기준으로 약 9,182억원 수준이다.

□ 아울러 금번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에 통보하면 기획재정부는 1개월 20일 이내에 종료여부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.

<붙임1> 『중국 및 인도산 PET필름』 반덤핑 재심사 개요

<붙임>

『중국 및 인도산 PET필름』 반덤핑 재심사 최종판정 개요

□ 재심사 개요

○ 요청인 : 도레이첨단소재(주), 코오롱인더스트리(주), (주)효성, (주)화승인더스트리

○ 대상국 : 중국, 인도

○ 재심사 대상물품 : PET필름

* PET필름 정의 : 테레프탈산(Terephthalic Acid)과 에틸렌글라이콜(Ethylene Glychol)과의 축중합으로 얻어지는 PET 필름 Chip을 건조공정 및 용융과정을 통해 면상으로 압출한 후 냉각, 고화시킨 다음 종횡연신을 하여 일정한 두께와 물성을 부여한 면상필름을 의미

□ 국내 수입·수요자

○ 수입자 : ㈜재현, ㈜동양하이폴, ㈜송암전자, ㈜지중전자, 뉴모텍㈜ 등

○ 수요자 : 필켐, 씨에프텍, 하나로필름, 세종필름, 케이원 등

□ 그 동안의 반덤핑조치 경과

○ 원심조치기간 : '08.10.27～'11.10.26 (3년)

○ 조치내용 : 5.67%~25.32%의 덤핑방지관세 부과

* 중국(5.67~25.32%), 인도(10.43%~25.32%)

□ 재심사 경과

○ '11. 4.22. : 요청인의 재심사 신청

○ '11. 5.25. : 재심사 개시의견 결정 (제290차 무역위원회)

○ '11. 6.22. : 재심사 개시 공고 (기획재정부)

○ '11. 6.28.~12.23 : 이해관계인(국내 생산·수입·수요자, 대상국 공급자) 조사

○ '12. 2.22. : 산업피해조사 관련 공청회 개최

○ '12. 3.28. : 최종판정(3년간 덤핑방지관세부과 연장)